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알뜰폰은 '11년 최초 도입 이후 저렴한 서비스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낮은 진입요건으로 고객보호 및 보안 역량이 미흡한 부실사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며 부정개통 사건 등이 지속되고 있는 바, 부실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방지하고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25.1.15.)」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알뜰폰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뜰폰사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망 알뜰폰 사업자의 요건을 감안하여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기준 신설(시행령 별표1 제1호 자목)

※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 망 알뜰폰에 대한 자본금 기준은 현행 30억원 유지

나. 알뜰폰사의 등록요건 중 이용자보호계획 제출을 전체 사업자에 대해 의무화하도록 요건에 반영(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

※ (기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 망 알뜰폰 사업자 제출 의무 → (변경) 전체 도매제공사업자(SKT, KT, LGU+)망 알뜰폰 사업자 제출 의무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등록 요건
1. 재정적 능력	자.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 중 법 제 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설비 미보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

별표 1 제3호 다목 중 “회선설비 보유사업 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하려는 자”를 “회선설비 보유사업 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설비 미보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한다

별표 1 제3호 다목 단서 중 “다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경우는”을 “다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과 설비 미보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의 경우는”으로 한다.

이 영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 1. 재정적능력 <table><tr><th>구분</th><th>등록 요건</th></tr><tr><td>1. 재정적능력</td><td>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이라 한다):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았을 것 나.~아. (생략) <u><신 설></u></td></tr></table>	구분	등록 요건	1. 재정적능력	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이라 한다):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았을 것 나.~아. (생략) <u><신 설></u>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 1. 재정적능력 <table><tr><th>구분</th><th>등록 요건</th></tr><tr><td>1. 재정적능력</td><td>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이라 한다):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았을 것 나.~아. (현행과 같음) 자.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 중 법 제 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설비 미보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td></tr></table>	구분	등록 요건	1. 재정적능력	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이라 한다):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았을 것 나.~아. (현행과 같음) 자.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 중 법 제 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설비 미보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
구분	등록 요건								
1. 재정적능력	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이라 한다):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았을 것 나.~아. (생략) <u><신 설></u>								
구분	등록 요건								
1. 재정적능력	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이라 한다):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았을 것 나.~아. (현행과 같음) 자.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 중 법 제 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설비 미보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								
3. 이용자 보호계획 <table><tr><th>구분</th><th>등록요건</th></tr><tr><td>3. 이용자 보호계획</td><td>가.~나. (생략) 다. 회선설비 보유사업 또는 도매 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할 것. 다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경우는 6) 및 7)의 사항은 제외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임원급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 및 폐</td></tr></table>	구분	등록요건	3. 이용자 보호계획	가.~나. (생략) 다. 회선설비 보유사업 또는 도매 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할 것. 다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경우는 6) 및 7)의 사항은 제외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임원급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 및 폐	3. 이용자보호계획 <table><tr><th>구분</th><th>등록요건</th></tr><tr><td>3. 이용자 보호계획</td><td>가.~나. (현행과 같음) 다. 회선설비 보유사업 또는 도매 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설비 미보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할 것. 다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과 설비 미보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의 경우는 6) 및 7)의 사항은 제외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임원급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td></tr></table>	구분	등록요건	3. 이용자 보호계획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회선설비 보유사업 또는 도매 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설비 미보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할 것. 다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과 설비 미보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의 경우는 6) 및 7)의 사항은 제외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임원급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등록요건								
3. 이용자 보호계획	가.~나. (생략) 다. 회선설비 보유사업 또는 도매 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할 것. 다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경우는 6) 및 7)의 사항은 제외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임원급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 및 폐								
구분	등록요건								
3. 이용자 보호계획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회선설비 보유사업 또는 도매 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설비 미보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할 것. 다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과 설비 미보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의 경우는 6) 및 7)의 사항은 제외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임원급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기에 관한 사항 3) 정보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 4) 24시간 고객응대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불만처리 직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중대한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정보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 4) 24시간 고객응대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불만처리 직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중대한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라.~마. (생략)	라.~마.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645